

농림축산식품부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내 용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도(農道) 등 농로 포함),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이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 기반 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르면 농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농업용수는 준공신고 후 3년 주기로 1회 수질검사)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 항상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를 받는 등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상남도 창원시, 함안군 등 8개 시·군에서는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대형관정 총 1,090개 중 174개 관정(15.9%)이 [표 1] “농업용 대형 관정 수질검사 미 실시 현황”과 같이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 하였는데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표 1]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미 실시 관정 현황(2016. 9월말 기준)

시·군	보유 관정수	정기 수질검사 현황 (2013.1월 ~ 2016. 9월까지)		최근 점검연도별 정기검사 미 실시 관정수	비고
		실시	미 실시		
합계	1,090	880	174		15.9% (정기검사 미 실시율)
창원시	189	170	4	(2011년) 3, (2012년) 1	사용불가(15개) 미포함
진주시	60	37	23	(2013년) 23	
사천시	20	12	8	(2013년) 8	
김해시	24	19	2	(2012년) 2	사용불가(3개) 미포함
밀양시	28	28			
의령군	34	14	20	(2012년) 13, (2013년) 7	
함안군	164	109	55	(2011년) 1, (2012년) 7 (2013년) 47	
창녕군	57	57			
고성군	244	244			
남해군	63	13	50	(2009년) 2, (2011년) 8, (2013년) 40	
하동군	98	80			사용불가(18개) 미포함
산청군	47	47			
함양군	8	8			
거창군	23	11	12	(2012년) 1, (2013년) 11	
합천군	31	31			

또한, 시군별 자료를 재확인한 결과 하동군 등 3개 시군에서는 [표 2] “농업용 대형관정 사용불가 현황”과 같이 수질검사 결과 염소이온 검출로 부적합 판정(1개)을 받았거나 수리필요, 위치확인 곤란, 시설보수 실익 없음 등 사용불가 판정(35개)을 받은 관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관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표 2] 농업용 대형관정 사용불가 현황(2016. 9월말 기준)

시·군	보유 관정수	현지확인 결과			준공년도별 사용불가 현황	비고
		부적합 관정수	사용불가 관정수	소계		
합계	308	1	35	36		
창원시	189		15	15	(1988년) 1, (1994년) 8, (1995년) 3 (1999년) 1, (2003년) 1, (2010년) 1	
김해시	21		3	3	(2011년) 3	
하동군	98	1	17	18	(1989년) 3, (1990년) 1, (1992년) 1 (1993년) 1, (1995년) 1, (1996년) 3 (1997년) 1, (1998년) 6, (1999년) 1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 진주시장, 사천시장, 김해시장, 의령군수, 함안
군수, 남해군수, 거창군수는

정기 수질검사 기간이 경과한 관정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질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영농철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장, 김해시장, 하동군수는

적합한 농업용수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사용불가 판정이 나온 상기 36개 관정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이용중지(폐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